

의안 번호	1321	【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. 2. 1.(수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2. 2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2. 13.(월)

2. 제안이유

- 가. 테니스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현실화 및 다자녀가구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추가하고,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사용료 현실화(별표 4)
 - 테니스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현실화
⇒ 주 4회, 개인강습 150,000원(20분), 단체강습 90,000원(1팀 4명 이상, 50분)
- 나. 사회통념상 적용되는 정의규정 삭제(안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)
 -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청소년 보호법」 등 사회통념상 적용되는 어린이, 청소년, 성인, 노인의 정의 규정을 삭제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(안 제7조제4항, 제9조제1항, 제12조제1항, 제16조제1항, 제17조)

4. 근거법규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5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테니스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현실화하고, 다자녀가구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추가하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일부 자구(안 제2조, 제7조제4항, 제8조제2호가목, 제17조) 정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.

근 거 법 규

□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5조[전문체육시설]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·외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,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제6조[생활체육시설]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제8조[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]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

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「청소년 보호법」

제2조[정의]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1.6.>

1. "청소년"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.
2. ~ 8. (생략)

「노인복지법」

제1조의2[정의]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~ 4. (생략)
5. "노인학대관련범죄"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.

제26조[경로우대] ① (생략)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

제2조[정의]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~ 4. (생략)
5. "어린이"란 만5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6. "청소년"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7. "성인"이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
8. "노인"이란 만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

제7조(이용료 징수 등) ① ~ ② (생략)

③ (생략)

1. 이용료 면제

가. ~ 나. (생략)

2. 이용료 감면

가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, 국가보훈대상자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장애인, 노인, **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원**, 이용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: 50퍼센트
나. (생략)

「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」

제6조(문화강좌 수강료 및 입장료 감면 등) ① (생략)

가. ~ 자. (생략)

차. 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원 : 20퍼센트

카. ~ 타. (생략)

② (생략)

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저출산대책"이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·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.
2. "**다자녀가정**"이란 울산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거주하고 막내가 2000년도 이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.